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
----------	-----

제출년월일 : 2020. 10.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고사항 반영 및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 규정을 명시(안 제4~7조, 제15조)
- 나. 행정안전부의 국가유공자 등 공공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규정 정비권고 반영 (안 제13조)
- 다. 행정안전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이용료를 원칙적으로 미 반환하도록 하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권고 반영(안 제14조)
- 라. 공공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의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안 제21조)
- 마. 수탁자의 계약사항 위반시 일정기간 위탁참여 제한하여 공공체육시설의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 (안 제23조)
- 바.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및 사용료의 국민체육센터 이외 개별 실내체육관을 ‘기타 실내체육관’으로 단일화함(안 별표 1) 및 기타 용어 수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별첨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0. 8. 5. ~ 8. 2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 ①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 도 또한 같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도 또는 군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제6조 제목 “(이용허가 제한 등)”을 “(이용허가의 취소)”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터 30일간 이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4호 중 “매분기별”을 “매 반기별”로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사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어린이집

라. 평창군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장애등급 1~3급에 한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다. 가·나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차.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카.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이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군의 귀책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환급 및 배상한다.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2. 이용일 4일 전부터 2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3.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4. 이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 제목“(이용자의 설비)”를 “(이용자의 부대시설 설치)”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생활체육관련단체”를 “체육관련단체”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23조의 제목 “(위·수탁의 취소)”를 “(위탁계약의 해지)”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각 호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1. 이용료 기본액

(단위:원)

구분	체육시설		기본액	비 고
전용이용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테니스장		25,000	
	궁도장		12,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족구장		10,000	
	야구장		20,000	
	풋살구장		2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파크골프장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일부이용	일반체육시설	개인	1,200	·2시간 기준임
		개인(월액)	20,000	
		단체(1인당)	800	
	체력단련실	개인	3,000	
		개인(월액)	40,000	
샤워실	개인(월액)	10,000		

2. 사용료 기본액

(단위:원)

경기장 구분		기본액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80,000	
체 육 관	국민체육센터	150,000	
	기타 실내체육관	110,000	
테니스장		35,000	
궁도장		15,000	
축구장(천연잔디)		120,000	
축구장(인조잔디)		60,000	
족구장		15,000	
야구장		30,000	
풋살구장		3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파크골프장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이 경우 2인 이상 같은 조건으로 경합시에는 군수가 결정한다.

1.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관내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3. 직장 및 동호회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4.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5.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이외의 기타 행사 등

<신 설>

제6조(이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용허가를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하거나 기타 필요

제5조(이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도 또는 군의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 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
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
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

제6조(이용허가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군수의 지시를 위반
한 때

2.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
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체육시
설 이용이 불가할 때

3.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
료를 체납하였을 때

4. 기타 군수가 체육시설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야 한다고 판단될 때

<신 설>

<신 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 ③ (생략)

④ 군수는 소관 체육시설의 활
용실태를 매 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대주민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이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이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삭 제)

② 제1항에 따라 이용허가의 취
소 또는 이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정지된 날부
터 30일간 이용허가를 금지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의
취소 등 처분결과는 주민이 잘
볼 수 있게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개방)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 매 반기별 -----

-----.

⑤ (생략)

제13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제1호부터 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가 이용할 경우 이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6호의 자가 이용할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평창군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학교, 영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한 보육시설
2.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 및 평창군 체육회,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단체
3. 강원도 또는 평창군 대표선수로 선발된 자 중 강원도교육청, 강원도평창교육지원청, 강원도체육회, 평창군체육회가 인정하는 자
4. 국가유공자,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5. 기타 군수가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군의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료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이용료를 포함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 및 행사
- 다.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관내 어린이집
- 라. 평창군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인(장애등급 1~3급에 한함)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시책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6.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2. 100분의 80 감면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다. 가·나목에 해당하는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가 주관하는 경기·행사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마.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3.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차. 가족친화 인증기업의 종사자

카. 평창군에 주소를 둔 자가 개인훈련, 연습경기,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해당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②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이 제1호의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액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국민생활체육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대상자 중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이용료

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자가 감면을 -----

감면 신청서를 이용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된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또는 우천으로 이용이 전혀 불가능할 때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3.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1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하여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90퍼센트를 반환할 수 있다.

<신 설>

-----.

제14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반환한다.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2. 이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총액의 10% 공제 후 반환

3. 이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

② 군의 귀책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징수한 이용료를 환급 및 배상한다.

1. 이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신 설>

<신 설>

2. 이용일 4일 전부터 2일 전
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10% 배상

3.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20% 배상

4. 이용일 그날 취소 또는 통
지가 없는 경우 : 이용료 전액
환급 및 이용료의 30% 배상

③ 예약자 본인의 귀책 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
고, 전염병, 황사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
에서 나열한 상황,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
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
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일 이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 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
리 적용할 수 있다.

제15조(이용자의 설비) ① 이용

제15조(이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자가 이용 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21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생활체육관련단체 및 지역 동호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23조(위·수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수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①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되, 홍보물(입간판·현수막·벽보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단, 대회 등 일시적인 행사안내 등의 홍보물은 예외로 한다)

제21조(위탁관리) ① -----

----- 체육관련단체 -----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적용한다.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 4. (현행과 동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1년간 위탁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현 행

[별표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1. 이용료 기본액 (단위 : 원)

구분	경기장	기본액	비 고	
전용이용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대화문화체육관		90,000
		계촌체육관		80,000
		미탄체육관		80,000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70,000
	테니스장	25,000		
	공도장	12,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족구장	10,000		
	야구장	20,000		
	풋살구장	2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파크골프장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일부이용	일반 체육시설	개인	1,200	
		개인(월액)	20,000	
		단체(1인당)	800	
	체력단련실	개인	3,000	
		개인(월액)	40,000	
	샤워실	개인(월액)	10,000	

2. 사용료 기본액 (단위 : 원)

경기장 구분	기본액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8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50,000
	대화문화체육관		130,000
	계촌체육관		110,000
	미탄체육관		110,000
	대관령 트레이닝센터		90,000
테니스장	35,000		
공도장	15,000		
축구장(천연잔디)	120,000		
축구장(인조잔디)	60,000		
족구장	15,000		
야구장	30,000		
풋살구장	3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파크골프장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개 정 안

[별표1]

평창군 공공체육시설 이용료(제10조 관련)

1. 이용료 기본액 (단위 : 원)

구분	체육시설	기본액	비 고		
전용이용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5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이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2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00,000	
		기타 실내체육관		80,000	
		테니스장		25,000	
	공도장	12,000			
	축구장(천연잔디)	80,000			
	축구장(천연잔디 외)	40,000			
	족구장	10,000			
	야구장	20,000			
	풋살구장	2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파크골프장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일부이용	일반 체육시설		개인	1,200
				개인(월액)	20,000
				단체(1인당)	800
체력단련실		개인	3,000		
		개인(월액)	40,000		
샤워실		개인(월액)	10,000		

2. 사용료 기본액 (단위 : 원)

체육시설	기본액	비 고	
종합운동장 육상경기장	180,0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기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 테니스장은 1면당 기준 금액임 · 3시간 기준임.	
종합운동장 잔디그라운드	180,000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150,000
	기타 실내체육관		110,000
	테니스장		35,000
공도장	15,000		
축구장(천연잔디)	120,000		
축구장(인조잔디)	60,000		
족구장	15,000		
야구장	30,000		
풋살구장	30,000		
골프연습장	15,000		
게이트볼장(전천후)	20,000		
게이트볼장(실외)	10,000		
파크골프장	20,000		
실외 농구장	무료		

관련 공문 발취

■ 미반환 원칙 규정

- (내용)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반환하도록 규정

< OO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제0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1. 전용사용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일 0일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연기한 경우
2.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잠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로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없는 경우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전혀 방송되지 않은 경기 및 행사
4.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

- (위법성) 모든 반환의무 발생 사유를 반환사유로 규정하지 않는 한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까지 반환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이어서 위법
 - (정비방향) 위법 소지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반환을 검토할 수 있도록 반환사유 예시규정으로 개정
- ⇒ 열거되지 않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및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반환의무 여부 및 범위를 판단

현 행	예 시 안
제0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② <u>이미 납입한 사용료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u>	제0조(사용료 및 관리비 등) ②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반환사유 예시 1 3. 반환사유 예시 2

관련 법령 발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6조(생활체육시설)**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②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생활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이나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 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 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법 제23조에 따라 고궁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2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0조에 따라 참전유공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 ② 참전유공자가 제1항에 따라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여야 한다.
-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등 참전유공자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참전유공자에 대한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 수 있다.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2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1.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2. 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0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②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라 고궁·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하는 고궁 등 이용증(이하 "이용증"이라 한다)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을 내보이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법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보훈처장에게 이용증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보훈처장은 발급대상인지를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 ④ 이용증의 신청방법, 발급기관, 발급절차 및 서식 등 이용증의 신청 및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0조의3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9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 · 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애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국·공립공원	100분의 100
3.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국·공립수목원	100분의 100
7.국·공립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100분의 50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법 제74조에 따른 고궁 등의 이용지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는 "특수임무유공자"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은 "특수임무유공자증 또는 특수임무유공자유족증"으로 본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의사자·의사자유족 및 의사자가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사자. 다만, 의사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대관전시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 제15조의4(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환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이용대상, 시설의 종류 및 감면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 ② 등록포로와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 제1항에 따른 시설을 무료로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제6항에 따른 귀환용사증 또는 귀환용사가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6조제1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붙임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2호

3. 미첨부 사유

-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시설관리과장 이대환
연락처	(033) 330 - 2019